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60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강명구・성일종・나경원
임종득・김정재・엄태영
구자근・김미애・박성훈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 주주의 주주가치가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주력 사업 변화를 통해 사업의 중심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거나, 사양 업종을 매각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물적분할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5 및 제165조의6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5제1항 중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이 분할기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

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주식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의 우선 배정 주주의 범위, 우선 배정 주식의 한도 및 주식 배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물적 분할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식을 우선하여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 및 제16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 ---------- ----------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⑤ ------------------------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이 분할기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주식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의 우선 배정 주주의 범위, 우선 배정 주식의 한도 및 주식 배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물적 분할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식을 우선하여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11. ~ 25. (생 략)	11. ~ 25. (현행과 같음)